

2. 활동기간 연장

가. 주 문

-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3. 9. 9 - 93. 12. 8에서 93. 9. 9 - 94. 3. 10로 연장 변경한다.

나. 제출이유

- 부천시시립예술평단채설치조례, 부천시문화상조례,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,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으며,
-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상위법의 합치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되고 있으므로 94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

의안번호	230
의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및 공고, 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
-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홍보수단 정립
- 각종 공보를 통합 발행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법적 효과 부여

☐ 주요골자

- 목 적(안 제1조)
- 명 칭(안 제2조)
- 규격 및 발행일(안 제3조)
- 게재내용(안 제4조)
- 배부기준(안 제5조)
- 편집주간 및 보조원(안 제6조)

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집, 배부,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시보의 명칭은 “부천시 시보”라 한다.

제3조(규격 및 발행일)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, 격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,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게시일자에 따라 필요 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.

제4조(게재내용) ①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, 인사, 자치법규, 임명예고, 고시, 공고 등을 게재한다.

②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판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.

제5조(배부기준) 시보는 국가기관, 각 시·도와 시·군·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, 시의원, 동·반장까지 배부한다.

제6조(편집주간 및 보조원) ① 시보 편찬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가. 주 간 : 지방별정 6급 15호봉대우 1명

나. 보조원 : 지방별정 7급 15호봉대우 1명

③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, 수당, 여비 등의 범위,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, 부천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231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- 보호자가 근로질병 또는 질병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
-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위탁교육 계약의 조건
- 위탁시설의 운영
- 운영경비의 지원
- 위탁시설 지도감독